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목 차>

1. 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변경
2.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변경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작 성 자	이름	박진숙
	담당부서 (과)	지역금융지원과		직급	행정5급
	국장	조성환		연락처	044-205-3946
	과장	이광용		이메일	vision0504@mail .go.kr

2023. 12. 14. 작성

정책책임자 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변경		
	2.규제조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24조의2		
	3.위임법령	새마을금고법 제61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4.03.29~2024.05.0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감사위원회는 중앙회의 업무 집행 및 회계 등을 감사하는 역할로 5명의 위원 중 3인을 외부전문가로 선임하게 되어 있으나, － 대부분 중앙회·금고 관련 업무 담당자를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하여 운영하고 있음 ○ 중앙회·금고와의 관계를 최대한 배제시켜 감사위원회의 고유 업무인 중앙회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사 추진 필요		
	7.규제내용	○ 감사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변경 － 중앙회·금고에서 최근 5년 내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 변경 ※ (현행) 다만 중앙회 또는 금고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우 → (변경) 다만 중앙회 또는 금고에서 최근 5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우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위원회 위원 입후보 예정자		
	9.규제목표	중앙회·금고와의 관계를 최대한 배제시켜 감사위원회의 고유 업무인 중앙회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사 추진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설정 제24조의2 연장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재검토행 2024.01.01~2026.12.31 3년		
	13. 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의2(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앙회, 금고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다만, 중앙회 또는 금고에서 최근 <u>2년</u>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우(중앙회의 감사위원으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2.~5. (생략)	제24조의2(감사위원의 자격요건) -- ----- ----- ----- -----. 1. ----- ----- ----- ----- ----- ----. ----, ----- ----- <u>5년</u> ----- ----- ----- ----- -----. 2.~5. (현행과 같음)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감사위원회는 중앙회의 업무 집행 및 회계 등을 감사하는 역할로 5명의 위원 중 3인을 외부전문가로 선임하게 되어 있으나,

- 대부분 중앙회·금고 관련 업무 담당자를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필요성) 중앙회 및 금고 업무를 담당한 사람을 외부 전문가 위원으로 선출함에 따라 회장 등 중앙회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사 곤란

※ 중앙회 및 금고와 관련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 독립적인 의견 제시와 객관적인 감사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대안내용) 중앙회·금고에서 최근 5년 내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 변경

※ (현행) 다만 중앙회 또는 금고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우
→ (변경) 다만 중앙회 또는 금고에서 최근 5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우

- (선택근거)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중앙회의 실효성 있는 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경영혁신안대로 규정

※ 중앙회 및 금고에서 근무한 사람이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 기관과의 이해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5년의 기간은 이해관계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 간격으로 판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감사위원회 위원 입후보예정자	(일시) '24. 4. 1. ~ '23. 5. 11. (방법) 국민참여입법센터, 일반 우편, 전자우편, 유선, 팩스 등		

3. 규제 목표

- 중앙회·금고와의 관계를 최대한 배제시켜 감사위원회의 고유 업무인 중앙회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사 추진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목적) 규제의 목적은 중앙회·금고와의 관계를 최대한 배제시켜 감사위원회의 고유 업무인 중앙회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사를 추진하기 위함임
- (비례적 타당성) 개정안은 농협, 수협 등 타 상호금융기관에 적용 중인 감사위원회 자격요건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새마을금고 혁신을 위해 마련한 경영혁신안의 일부로 비례적 타당성 인정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일몰 : 3년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 타법사례

새마을금고	농 협	수 협	산림조합
· 중앙회·금고 10년 등 (중앙회·금고 최근 2년 이내 임직원 배제)	· 중앙회·조합 10년 등 (중앙회·금고 최근 3년 이내 임직원 배제)	· 중앙회·조합 10년 등 (중앙회·금고 최근 2년 이내 임직원 배제)	· 중앙회·조합 10년 등 (중앙회·금고 최근 2년 이내 임직원 배제)
금고법시행령 §24조의2	농협법 §129 농협법시행령 §11조의7	수협법시행령 §24조의2	산림조합법시행령 §11조의13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개정안에 따른 감사위원회 자격요건의 경우 타 상호금융기관의 입법례와 다소 차이는 있으나 피규제자(입후보예정자)의 예측가능한 수준에 부합하여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중앙회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상자를 중앙회 및 금고와 관계없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내용으로 자격 요건을 규정하였으며
- 감독기관의 검사·감독을 통하여 규제 준수 여부의 지속 모니터링 가능하여 행정적으로 집행하는 데 문제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예산투입은 필요하지 않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혁신안 마련) 새마을금고의 근본적인 쇄신을 위해 중앙회 내 경영혁신위원회 출범·운영, 새마을금고 혁신안 마련('23.11.14일)
- (법안 발의) 중앙회장 단임제, 전문경영인체제 도입 등 지배구조 개선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 강화 내용 법안 발의('23.11.17일, 조은희 위원)
- (시행령 개정) 경영혁신안 중 법개정 외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행 가능한 과제는 별도 추진

2. 향후 평가계획

- 시행령 개정 이후 해당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예정

3. 종합결론

- 중앙회·금고와의 관계를 최대한 배제시켜 감사위원회의 고유 업무인 중앙회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사 추진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변경		
	2.규제조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1조의3		
	3.위임법령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3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4.03.29~2024.05.0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금고감독위원회는 금고의 감독·검사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역할로 5명의 위원으로 구성 － 대부분 중앙회·금고 관련자를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하여 운영하고 있음 ○ 금고와 관계없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금고감독위원회의 고유 업무인 금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독·검사 추진 필요		
	7.규제내용	○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변경 － 금고 경력자는 배제하고, 중앙회에서 최근 5년 내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 변경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입후보 예정자		
	9.규제목표	금고와 관계없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금고감독위원회의 고유 업무인 금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독·검사 추진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여부기준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설정		제 79조의3	연장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재검토행		2024.01.01~2026.12.31	3년
	13.	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의3(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79조의3제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건”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1조의3(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 ----- ----- -----.
1. <u>중앙회 또는 금고</u> 에서 감사·감 독(지도를 포함한다) 또는 회계 관련 부문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다만, <u>중앙회 또는 금고에서</u> 최근 <u>2년</u>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우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으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우는 제외하 다)는 제외한다.	1. <u>중앙회에서</u> ----- ----- ----- ----- ----- -----, <u>중 앙회에서</u> ----- <u>5년</u> ----- -----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u>금융업</u> 관련 국가기관·연구기 관·교육기관이나 금융감독원에서 공무원이나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3. <u>금융</u> 관련 국가기관·연구기 관·교육기관이나 금융감독원에서 공무원이나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I. 규제 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금고감독위원회는 금고의 감독·검사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역할로 5명의 위원으로 구성
 - 대부분 중앙회·금고 관련자를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필요성) 금고와 관계없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금고감독위원회의 고유 업무인 금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독·검사 곤란
 - ※ 금고와 관련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 독립적인 의견 제시와 객관적인 감사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대안내용) 중앙회에서 최근 5년 내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 변경
 - ※ (현행) 중앙회, 금고에서 감사·감독 또는 회계 관련 부문에서 10년 이상 근무. 다만 중앙회 또는 금고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우(금고감독위원회 위원으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
 - (변경) 중앙회에서 감사·감독 또는 회계 관련 부문에서 10년 이상 근무. 다만 중앙회에서 최근 5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우(금고감독위원회 위원으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
- (선택근거)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금고의 실효성 있는 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경영혁신안대로 규정
 - ※ 중앙회에서 근무한 사람이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 기관과의 이해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5년의 기간은 이해관계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 간격으로 판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감사위원회 위원 입후보예정자	(일시) '24. 4 .1. ~ '23. 5.11. (방법) 국민참여입법센터, 일반 우편, 전자우편, 유선, 팩스 등		

3. 규제목표

- o 금고와의 관계를 최대한 배제시켜 금고위원회의 고유 업무인 금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사 추진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목적) 규제의 목적은 금고와의 관계를 최대한 배제시켜 금고감독위원회의 고유 업무인 금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사를 추진하기 위함임
- (비례적 타당성) 개정안은 농협, 수협 등 타 상호금융기관에 적용 중인 금고감독위원회 자격요건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새마을금고 혁신을 위해 마련한 경영혁신안의 일부로 비례적 타당성 인정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일몰 : 3년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 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해당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해당없음
네거티브 리스트		해당없음
사후 평가관리		해당없음
규제 샌드박스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 타법사례

새마을금고	농 협	수 협	산림조합
· 중앙회·금고 감사,감독 또는 회계 10년 등 (중앙회·금고 최근 2년 이내 임직원 배제)	· 중앙회·조합 감사, 회계 또는 농정부문 10년 등 (중앙회·금고 최근 3년 이내 임직원 배제)	· 중앙회·조합 감사, 회계 또는 수산부문 10년 등 (중앙회·금고 최근 2년 이내 임직원 배제)	· 중앙회·조합 감사, 회계 또는 산림행정부문 10년 등 (중앙회·금고 최근 2년 이내 임직원 배제)
금고법시행령 §51조의3	농협법 §144 농협법시행령 §22	수협법시행령 §30	산림조합법시행령 §20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개정안에 따른 금고감독위원회 자격요건의 경우 타 상호금융기관의 입법례와 다소 차이는 있으나 피규제자(입후보예정자)의 예측가능한 수준에 부합하여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금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상자를 금고와 관계없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내용으로 자격 요건을 규정하였으며
- 감독기관의 검사·감독을 통하여 규제 준수 여부의 지속 모니터링 가능하여 행정적으로 집행하는 데 문제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예산투입은 필요하지 않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혁신안 마련) 새마을금고의 근본적인 쇄신을 위해 중앙회 내 경영혁신위원회 출범·운영, 새마을금고 혁신안 마련('23.11.14일)
- (법안 발의) 중앙회장 단임제, 전문경영인체제 도입 등 지배구조 개선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 강화 내용 법안 발의('23.11.17일, 조은희 위원)
- (시행령 개정) 경영혁신안 중 법개정 외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행 가능한 과제는 별도 추진

2. 향후 평가계획

- 시행령 개정 이후 해당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예정

3. 종합결론

- 금고와의 관계를 최대한 배제시켜 금고감독위원회의 고유 업무인 금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사 추진